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판결 사례 안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주요 판결 사례입니다.

시공관리자의 **위험성평가**, **작업계획서 이행확인**을 통한 안전작업 지도는 필수로 실시하시고, 다음 사례를 현장 작업시 안전조치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위반사례

- ① 중량물취급 작업계획서 미작성
- ② 안전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안전대를 걸 수 있는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과실
- ③ 거푸집 조립도 미작성, 관리감독자 미배치, 중량물취급 작업계획서 미작성(거푸집)
- ④ 중량물 취급 위험작업구역 출입통제 미실시, 유도자 미배치, 외출결이 인양
- ⑤ 위험성평가 미실시, 작업계획서에 위험요인 미반영
- ⑥ 중량물취급 사전조사(위험성평가) 미실시
- ⑧ 종사자 의견수렴 절차 미이행

▶ 판결사례

중대재해처벌법 판결(1호)

1. 공사개요

- 1) 공사명 : 연세나눔요양병원 증축공사
- 2) 소재지 :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98
- 3) 공사기간 : '22.03.29~'22.08.31
- 4) 공정률 : 45%
- 5) 공사금액 : 81억
- 6) 발주자 : 개인
- 7) 도급인 : ㈜은유파트너스
- 8) 수급인 : ㈜아오오오 (철골&데크, 6.9억)

2. 사고개요

'22. 5. 14 13:46경, 피해자(48세)가 5층 개구부(4.1m×1.63m)에서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채 원치를 이용하여 자재(75×75×6t×2.75l×5부, 94.2kg)를 받기 위해 개구부의 해체된 안전난간 위로 손을 뻗어 한줄걸이(슬링벨트)로 인양중인 자재 묶음을 건물 내부로 당기던 중 자재가 슬링벨트에서 이탈해 바닥으로 떨어지자 그 반동으로 추락(16.5m)하여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였으나 사망

3. 선고결과

선고일 : '23. 4.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피고인	선고	법령적용	위반내용	비고
㈜은유파트너스	벌금 3,000만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용자인 현장소장(김○○)이 산업재해 예방조치 미 실시 경영책임자인 대표이사(정○○)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조치 미 이행	
대표이사 (정○○)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업무일차 마련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업무수행 평가기준 마련 • 중대재해 대비 매뉴얼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성평가 • 직위 안전평가 • 비상훈련 외
현장소장 (김○○)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조사(작업내용, 작업장의 지형 및 상태) 미 실시 및 중량물취급작업계획서 미작성 • 작업지휘자 미지정 • 추락위험장소 산업재해 예방조치(안전난간, 추락방호망, 안전대 부착설비) 미 실시 • 자재 인양시 2줄걸이 미 실시 • 수월한 자재 인양을 위해 안전난간 해체사실을 알고 있었음 • 안전대 미지급 및 부착설비 미 설치 • LPG용기 위험물보관소 미보관 • 배전반 접지 미 실시 • 비계작업 통로 미 설치 • 이동식비계 안전난간 및 전도방지대 미 설치 	【특별감독 위반항목】
안전관리자 (방○○)	벌금 500만원	업무상과실치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월한 자재 인양을 위해 안전난간 해체사실을 알고 있었음 • 안전대 미지급 및 부착설비 미 설치 • 자재 인양시 2줄걸이 미 실시 	
수급인 ㈜아오오오	벌금 1,000만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용자인 현장소장(권○○)이 산업재해 예방조치 미 실시	
현장소장 (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량물취급작업계획서 미수립 • 안전대 미지급 및 부착설비 미 설치 • 추락위험장소 산업재해 예방조치(안전난간, 추락방호망, 안전대 부착설비) 미 실시 	

4. 양형 이유

건설근로자 사이에 만연한 안전난간 임의적 철거 관행도 일부 원인으로 책임을 모두 피고인에게 돌리는 것은 다소 가혹, 유가족에게 진정어린 사과와 합의금 지급으로 처벌 불원, 사고 재발방지 근거 다짐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밝힘, 피고인의 범죄전력이 없거나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과는 다른 종류의 범죄전력

중대재해처벌법 판결(2호)

1. 회사개요

- 1) 회사명 : 한국제강주식회사
- 2) 소재지 : 경남 함안군 군북면 장백로 394
- 3) 상시근로자 : 340명
- 4) 주요업종 : 열간 압연, 압출 및 연발제품 제조
- 5) 관계수급인 : 강백산업(2014년부터 보수작업 도급계약 체결, 매년 경산)

2. 사고개요

'22. 3. 16 13:50경, 한국제강 야외작업장에서 피해자(65세)가 철재 방열판(1,220kg, 가로300cm×세로140cm×두께6~12cm)의 앞 뒷면의 슬래그를 제거하고 표면을 연삭하는 보수작업을 하기 위해 방열판 상부의 리프팅 리그에 사출 없이 섬유벨트를 걸속하여 방열판을 들어올리는 과정에서 섬유벨트가 끊어지면서 방열판이 낙하하여 왼쪽 다리가 협착되어 18:20 삼성장원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중 대퇴동맥 손상에 의한 실혈성 쇼크로 사망

3. 선고결과

선고일 : '23. 4. 26 【장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피고인	선고	법령적용	위반내용	비고
한국제강㈜	벌금 1억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대표이사(경영책임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미 실시 대표이사(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조치 미 이행	
피고인 B 한국제강㈜ 대표이사 (안전보건총괄 책임자)	징역 1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업무수행 평가기준 마련 • 도급, 용역, 위탁시 산재예방 조치능력 평가기준-필차 마련 •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미작성 • 안전보건조치 미이행 [법 제38조, 39조] • 기계·기구, 설비에 의한 위험 • 폭발성, 발화성,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 굴삭, 제석, 하역, 발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안전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 •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속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전자기력으로 인한 위험이 있는 장소 • 방사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성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특별감독 위반항목】
피고인 A ㈜강백산업 사장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미작성 • 섬유벨트 손상 사용(중량물 인양작업 관리감독 미흡) • 오래되어 표면 딱딱 • 불티에 용해되고 굵힌 흙 • 기본 사용하중 표시이 없어져 안전성 조차 알 수 없도록 심하게 손상 	

4. 유리한 정상

병행을 인정하고 반성, 피해자도 어느정도 과실, 유족과 원만한 합의하여 선처 탄원, 사정명령 모두 이행, 과태료 자진납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과 도급-용역-위탁업체 안전보건 평가기준 마련, 다른 종류의 벌금형 외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음(강백산업 사장)

5. 불리한 정상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목적 및 제정경위에 비추 한국제강 대표이사는 2007년부터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재직해 왔고, 2010년 경찰청-노동부 합동점검에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2020년 노동청 감독에서 벌금형, 2021년 사망사고로 인한 정기감독에서 벌금형 및 사망사고 재판 벌금형으로 수년간 처벌되는 등 구조적 문제

중대재해처벌법 판결(3호)

1. 공사개요

- | | |
|------------------------|------------------------|
| 1) 공사명 : K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 4) 도급인 : ㈜시너지건설 |
| 2) 소재지 : 인천시 중구 율왕동 | 5) 수급인 : N건설[철근, 9.7억] |
| 3) 공사금액 : 73억 | |

2. 사고개요

'22. 3. 16 09:40경, 지하 1층 테라스 작업현장에서 기존에 조립된 거푸집(가로 8.65m×세로 1.2m×무게 0.5톤)의 높이를 30cm 낮추기 위해 거푸집동바리의 길이조정 나사를 돌리던 중 거푸집이 무게 중심을 잃고 전도되면서 거푸집 하중을 지지하던 동바리가 튕겨나와 피해자를 감타하여 그 충격으로 넘어지면서 바닥에 적치된 동바리서포트 받이판 부품에 머리를 부딪혀 09:45 응급실로 후송 후 치료 중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

3. 선고결과

선고일 : '23. 6. 23 [안전처벌법]

피고인	선고	법령적용	위반내용	비고	
도급인	주식회사 (피고인 A)	벌금 5,000만원 [가납명령]	산업안전보건법(63조, 38조 2항) 중대재해처벌법(4조 1항 1호)	사용자인 현장소장(피고인 C)이 산업재해 예방조치 미 실시 경영책임자인 대표이사(피고인 B)가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및 이행조치 미 이행	
	대표이사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중대재해처벌법(4조 1항 1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보건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하는 업무절차 마련, 반기 1회 이상 점검 및 필요한 조치 •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용도에 맞게 집행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업무수행 평가기준 마련,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 •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 마련, 반기 1회 이상 점검 후 필요한 조치 • 중대산업재해 발생하거나 급박한 위험 대비 등의 조치 매뉴얼 마련 	
	현장소장 (피고인 C)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안전교육수강 40시간]	산업안전보건법(63조, 38조 2항) 형법(26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크레인 등 인양장비에 거푸집을 매달지 않은 채 작업 수행 • 거푸집 조립도 미작성 • 관리감독자 미배치 상태 임의 작업 수행 • 중량을 취급 작업계획서 미작성(거푸집) 	
수급인	주식회사 (피고인 D)	벌금 700만원 [가납명령]	산업안전보건법(63조, 38조 2항)	실질적 대표자(피고인 F)가 산업재해 예방조치 미 실시	
	대표이사 (피고인 F)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안전교육수강 40시간]	산업안전보건법(38조 2항) 형법(26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크레인 등 인양장비에 거푸집을 매달지 않은 채 작업 수행 • 거푸집 조립도 미작성 • 관리감독자 미배치 상태 임의 작업 수행 • 중량을 취급 작업계획서 미작성(거푸집) 	

4.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 다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 원하지 않음, 피고인 C와 F는 동종 전과나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5. 불리한 정상

피고인 A는 2017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로 **벌금형**, 피고인 B는 2014년과 2017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로 **벌금형 전역**이 2회 있으며, **안전관리시스템 미비(의무위반)**로 사망

중대재해처벌법 판결(4호)

1. 공사개요

- | | |
|---------------------|-------------------------|
| 1) 공사명 : 예국가압장 개선사업 | 4) 발주자 : 장원시 상수도사업소 |
| 2) 소재지 : 경남 함안군 | 5) 도급인 : 만덕건설㈜ |
| 3) 공사금액 : 155억 | 6) 수급인 : ㈜대독건설[토공, 23억] |

2. 사고개요

'22. 5. 19 07:50경, 가압장 개선사업 현장에서 굴착기를 사용하여 토사를 덤프트럭에 상차하기 위해 붐대를 회전하던 중 흙막이 가시설 용접을 위해 후방 통로로 이동하던 피해자(서○식)의 머리가 굴착기 후면과 담장 사이에 협착되어 08:33경 삼성장원병원에서 치료 중 중중두부손상으로 사망.

3. 선고결과

선고일 : '23. 8. 25 [참원처벌법원 마산지원]

피고인	선고	법령적용	위반내용	비고	
도급인	만덕건설㈜	벌금 5,000만원 [가납명령]	산업안전보건법(63조) 중대재해처벌법(4조 1항 1호)	현장소장(김○식)이 산업재해 예방조치 미 실시 대표이사(류○철)가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및 이행조치 미 이행	
	대표이사 (류○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중대재해처벌법(4조 1항 1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보건목표와 경영방침 미설정 •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유도자) 배치 예산 미편성, 중중위험을 인식하였음에도 출입통제 안전시설비(표지판이나 울타리) 예산 미집행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충실한 업무수행 평가기준 마련하지 않음 • 협착사고 등 중대산업재해의 급박한 위험 대비 매뉴얼 마련하지 않음 	
	현장소장 (김○식)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산업안전보건법(63조) 형법(26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통로 미설치 • 협착위험 방지를 위한 근로자 출입통제(표지판이나 울타리) 미실시 • 근로자 출입을 통제한다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도 이에 따르지 않음 • 근로자가 부딪힐 위험장소에 유도자 미배치 	
수급인	㈜대독건설	벌금 1,000만원 [가납명령]	산업안전보건법(38조 1항 1호)	현장소장(김○도)이 산업재해 예방조치 미 실시	
	현장소장 (김○도)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산업안전보건법(38조 1항 1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통로 미설치 • 협착위험 방지를 위한 근로자 출입통제(표지판이나 울타리) 미실시 • 근로자 출입을 통제한다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도 이에 따르지 않음 • 근로자가 부딪힐 위험장소에 유도자 미배치 	
	굴착기사 (김○수)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형법(26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도자가 없음에도 통로 출입통제 조치 미 실시 • 굴착기 작업경내 보행 작업자 미확인 상태에서 굴착기 회전 업무상 과실 	

4. 유리한 정상

법형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 다짐,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 과실,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 원하지 않음, 피고인(김○수, 김○식) 초범, 피고인(김○도) 동종전과 및 벌금유예 초과전과 없음, 피고인(류○철) 동종전과 및 벌금형 초과전과 없음, 법원은 중대재해 발생사실 없음

5. 불리한 정상

중대법의 입법목적과 제정경위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으며, **안전관리시스템 미비**로 반복되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 경영책임자에게 더욱 엄중한 책임 필요

중대재해처벌법 판결(5호)

1. 공사개요

- | | |
|--|--|
| 1) 공사명 : ○○프라자2 신축공사
2) 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평안1로 158
3) 공사금액 : 88억 | 4) 도급인 : 건릉건설㈜
5) 수급인 : ○○○○[철근, 14억] |
|--|--|

2. 사고개요

'22. 3. 9 12:30경, 현장 지하2층에서 U자형 철근(길이 1,060mm, 폭 200mm, 두께 13mm, 무게 1.26kg)을 바닥 설치하기 위해 6m 높이의 쉘스 받 도로변에 적재(크레인 기사가 현장 내부를 볼 수 없음)된 해당 철근 190kg(U자형 철근150개 한 묶음)을 크레인으로 외출길에 하여 인양단 중 12:50경 철근이 슬라브에서 풀려 8m 아래로 떨어져 무전기로 신호를 주던 피해자의 머리에 부딪혀 인근 병원으로 후송 중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

3. 선고결과

선고일 : '23. 10.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피고인	선고	법령적용	위반내용	비고
도급인	주식회사 (피고인 C) 벌금 2,000만원 [가납명령]	중대재해처벌법(5조, 4조 1항 1호) 산업안전보건법(38조 2항, 3항)	대표이사(피고인 D)가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및 이행조치 미이행 현장소장(피고인 B)이 산업재해 예방조치 미실시	
	대표이사 (피고인 D)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중대재해처벌법(5조, 4조 1항 1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하는 절차 마련 미흡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평가기준 마련 미이행 • 도급, 용역, 위탁시 산재예방 조치능력 평가기준 마련 미이행 	
	현장소장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산업안전보건법(38조 2항, 3항) 형법(26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량물 취급작업 사전조사 미실시 및 작업계획서 미작성, 작업지휘자 미지정 • 크레인 작업시 근로자 출입통제(인양물이 머리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미실시 • 물체가 떨어질 위험장소 철근 인양작업시 외출길이 인양 	
수급인	주식회사 (피고인 A) 벌금 1,500만원 [가납명령]	산업안전보건법(38조 2항, 3항)	대표이사(피고인 H), 현장소장(피고인 G)이 산업재해 예방조치 미실시	
	대표이사 (피고인 H)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산업안전보건법(38조 2항, 3항) 형법(26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량물 취급작업 사전조사 미실시 및 작업계획서 미작성, 작업지휘자 미지정 • 크레인 작업시 근로자 출입통제(인양물이 머리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미실시 • 물체가 떨어질 위험장소 철근 인양작업시 외출길이 인양 	
	현장소장 (피고인 G)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산업안전보건법(38조 2항, 3항) 형법(26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량물 취급작업 사전조사 미실시 및 작업계획서 미작성, 작업지휘자 미지정 • 크레인 작업시 근로자 출입통제(인양물이 머리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미실시 • 물체가 떨어질 위험장소 철근 인양작업시 외출길이 인양 	
	크레인기사 (피고인 F)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형법(268조)	• 크레인 외출길이 운반시 떨어질 위험, 현장 밖에서 쉘스 내부가 안보여 적절 대처 어려움 잘 알고 있어 2출길이 수평 인양할 업무상 주의의무 소홀	
	철근반장 (피고인 E)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형법(268조)	• 중량물이 머리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조치 미실시, 외출길이 체결 과실	

4. 양형의 이유

안전보건 확보의무 불이행, 안전조치의무 불이행, 업무상과실 등으로 중대재해 발생, 피고인들 중 일부라도 주의의무를 다했으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인바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피해자(신호수)의 과실도 상당한 양형, 유족과 합의한 점, 민사상 합의 손해배상금 지급받은,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이행 노력.

중대재해처벌법 판결(6호)

1. 사업개요

- 1) 사업명 : 아파트 관리 위탁계약 체결
- 2) 소재지 : 서울 동대문구
- 3) 상시근로자 : 664명
- 4) 사업종류 : 공동주택관리업

2. 사고개요

'22. 4. 15 11:00경, 해당 아파트 1층 현관 앞 천장(높이 3.2m) 누수가 있어 이를 확인하기 위해 1.5m 높이의 사다리에 올라서서 이를 확인 하고 내려오던 중 불시의 이유로 떨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에 의한 중증 뇌부종으로 인한 뇌연수마비로 '22. 4. 22 01:56경 사망.

3. 선고결과

선고일 : '23. 10. 6 [서울북부지방법원]

피고인	선고	법령적용	위반내용	비고
도급인	주식회사 (피고인 C) 벌금 3,000만원 [가납명령]	중대재해처벌법(4조 1항 1호) 산업안전보건법(38조 3항 1호)	대표이사(피고인 B)가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및 이행조치 미이행 관리소장(피고인 A)이 산업재해 예방조치 미실시	
	대표이사 (피고인 B)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중대재해처벌법(4조 1항 1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관리소장인 피고인A에게 미전달) •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하는 절차 마련(관리소장인 피고인A에게 미전달) •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 마련 미이행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평가기준 마련 미이행 	
	아파트 관리소장 (피고인 A) 징역 8년 [집행유예 2년]	산업안전보건법(38조 3항 1호) 형법(26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재해 예방조치 미실시 (주락 등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 •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사다리에 올라가는 것을 보았음에도 착용지시 미이행 	

4. 양형의 이유

의무위반으로 피해자 사망, 아파트 관리소장(피고인 A)은 낮은 높이에서 일한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사고 당시 피해자 바로 옆에서 있으면서 안전모 미착용을 방지, 피해자의 좋지 못한 건강상태도 양형,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선처를 단원, 피고인들이 잘못을 모두 인정, 사고 후 사다리를 알미늄 접이식 비계로 교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정비하여 주기적으로 관리 및 점검하는 점 등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 피고인 A,B에게는 이중 범죄 불규명 외 다른 범죄전력 없음.

중대재해처벌법 판결(7호)

1. 공사개요

- | | |
|-------------------------------------|------------------------|
| 1) 공사명 : 제주대학교 생활관 4차 임대형 민자사업(BTL) | 4) 도급인 : J종합건설㈜ |
| 2) 소재지 : 제주시 아라동 | 5) 수급인 : P주식회사(해체, 4억) |
| 3) 공사금액 : 382억 | |

2. 사고개요

'22. 2. 23. 10:10경, 굴착기를 이용하여 기존 생활관에 높이 12m의 굴목을 해체하는 작업 중 피해자(굴착기 기사, 철거업체 대표)가 굴착기로 굴목 중간지점을 파쇄하던 중 굴목 상단부분(약 6m)이 무게를 지탱하지 못하면서 낙하하여 운전석을 그대로 충격하여 피해자(굴착기 기사, 철거업체 대표)를 덮쳐 다발성장기부전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

3. 선고결과

선고일 : '23. 10. 18 [제주지방법원]

	피고인	선고	법령적용	위반내용	비고
내 리 인	주식회사 (피고인 G)	벌금 8,000만원	중대재해처벌법(4조 1항 1호) 산업안전보건법(63조)	대표이사(피고인 E)가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및 이행조치 미이행 현장소장(피고인 A)이 산업재해 예방조치 미실시	
	대표이사 (피고인 E)	징역 1년2월 [집행유예 3년]	중대재해처벌법(4조 1항 1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보건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하는 절차 마련 미흡(방법-절차-시기에 대한 기준 미반영)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필요한 실질적 권한과 예산 부여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업무수행 평가기준 마련 •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 마련 •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급박한 위험 대비 등의 조치 매뉴얼 마련 	
	현장소장 (피고인 A)	금고 1년 [집행유예 3년]	산업안전보건법(63조) 형법(26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계획서에 사전조사(해체건물의 구조, 주변상황) 미실시 • 수직굴목 12m 해체작업 위험요인 작업계획서 미반영 • 전도-붕괴위험 굴목의 안전성평가 미실시 • 해체 잔재를 위해 장비를 올려 작업하지 않고 지면에서 그대로 굴착작업 방지 • 안전관리-감독 부재(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담당자 미투입, 현장소장 임의 현장 이탈) 	
	관리감독자 (피고인 B)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형법(26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체작업 위험요인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작업계획서 방지 • 전도-붕괴위험 굴목의 안전성평가 미실시 • 해체 잔재를 위해 장비를 올려 작업하지 않고 지면에서 그대로 굴착작업 방지 • 전반적인 안전관리-감독 부재(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담당자 미투입) 	
	안전관리자 (피고인 C)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형법(26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체작업 사전조사 미실시 • 해체작업 위험요인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작업계획서 방지 • 안전관리자 보좌 및 지도-조언 업무 소홀(해체작업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 안전 교육계획 수립-안전교육 실시, 사업장 순회점검 등) 	
감 리	건축사사무 소 대표 (피고인 D)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형법(26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조사를 미 실시하여 해체작업 위험요인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작업계획서 방지 • 작업계획서에 따라 건물 입구 상부(지붕)부터 해체하여야 하나 중앙부터 해체 방지 • 작업계획서에 없는 추가작업(굴목 해체)에 대해 시정 또는 중지를 요청하지 않음 	

4. 양형 이유

유족들에게 합의금이 지급되어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의 배우자가 처벌불원서를 별도로 제출하여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과실범인 점, 피고인 C는 아무런 범의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E는 벌금형 1회 이외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참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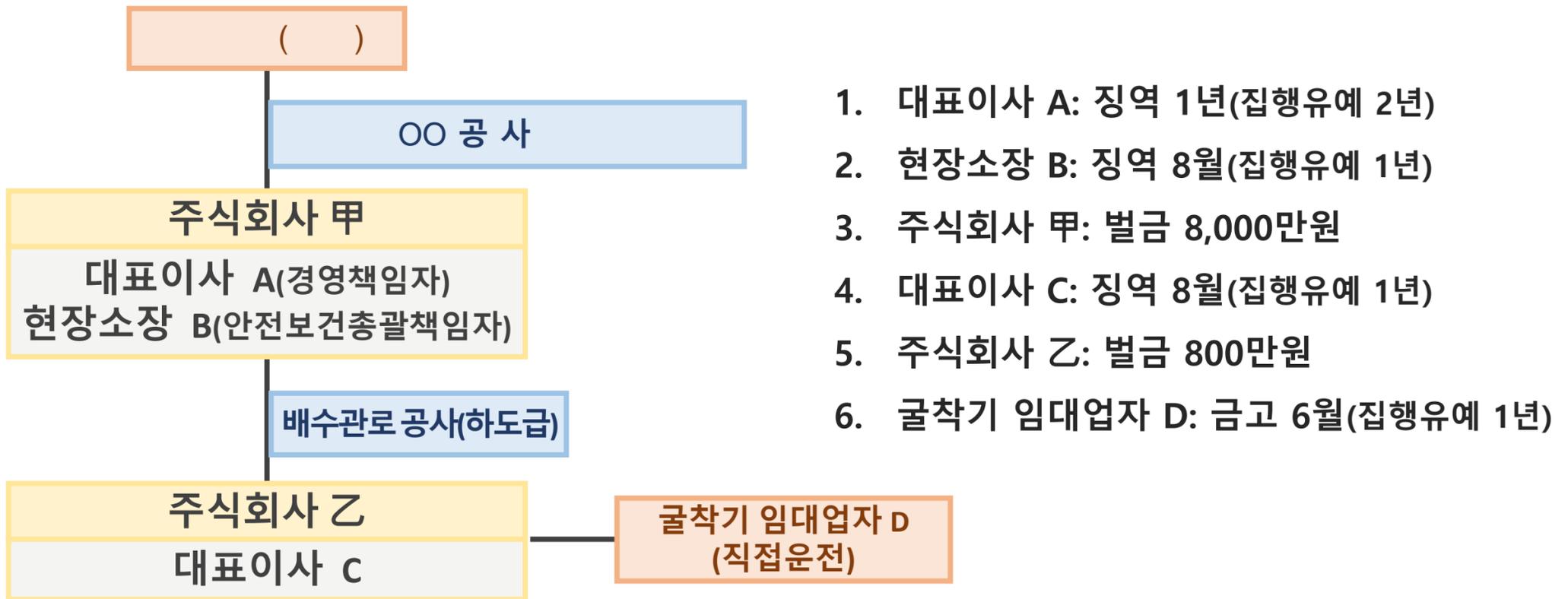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제10호 판결 선고

1 재해 개요

○ '22.6.8.00 공사 현장에서 흐트러진 골재 등을 빗질하여 정리 하던 근로자(주식회사乙)가 후진하는 굴착기에 역과되어 사망함

2 주요 피고인 및 선고형



1. 대표이사 A: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2. 현장소장 B: 징역 8월(집행유예 1년)
3. 주식회사 甲: 벌금 8,000만원
4. 대표이사 C: 징역 8월(집행유예 1년)
5. 주식회사 乙: 벌금 800만원
6. 굴착기 임대업자 D: 금고 6월(집행유예 1년)

1. 대표이사 A(甲):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조치) 불이행

- ▲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둘 것
- ▲ 사업장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 및 개선하는 업무절차 마련
- ▲ 수급인의 산재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 및 절차 등 마련

2. 현장소장 B(甲):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 도급인으로서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불이행

- ▲ (작업계획서 작성) 굴착기의 종류 및 성능, 운행경로, 작업방법 등에 대한 작업계획서 작성
- ▲ (유도자 배치 또는 접촉방지 조치) 굴착기에 부딪힐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가 출입하는 경우 유도자 배치

3. 주식회사 甲: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양벌 규정에 따른 법인 사업주 책임)



4. 대표이사 C(乙):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 사업주로서 산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불이행

▲ (작업계획서 작성) 굴착기의 종류 및 성능, 운행경로, 작업방법 등에 대한 작업계획서 작성

▲ (유도자 배치 또는 접촉방지 조치) 굴착기에 부딪힐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가 출입하는 경우
유도자 배치

5. 주식회사 乙: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양벌 규정에 따른 법인 사업주 책임)

6. 굴착기 임대업자 D: 업무상과실치사

- 작업반경 내 근로자의 존재 및 장애물의 유무 등 확인, 후방 감시 카메라 작동 등의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함

3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황

- 피고인들의 안전의무 위반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
- 사업장 종사자들의 안전확보와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반복되는 중대산업재해 방지를 위해 피고인들에게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 필요

○ 유리한 정황

-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 사고 발생 후 재발 방지를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는 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제11호 판결 선고

1 재해 개요

○ '22. 3. 25 .○○ 신축공사 현장 지하 3층 환기구 개구부에 있는 문과 문틀 도장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약 5.8m 아래인 지하 4층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함

2 주요 피고인 및 선고형

주식회사 甲 (발주)

서울 OO 신축공사

주식회사 乙

대표이사 A(경영책임자)
현장소장 B(안전보건관리책임자)

1. 대표이사 A: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2. 주식회사 乙: 벌금 5,000만원

1. 대표이사 A: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조치) 불이행
 - ▲ 사업장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 및 개선하는 업무절차 마련
 - ▲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및 유해·위험요인의 개선 등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적절한 집행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지에 대한 평가 기준 마련

2. 주식회사 乙: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양벌 규정에 따른 법인 사업주 책임)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 상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불이행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현장소장 B(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아래와 같은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 ▲ 개구부 등 추락 위험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착용하게 하거나 안전대를 지급하고 안전대 걸이 설치



3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황
 - 피고인들의 안전의무 위반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
 - 피고인 주식회사 乙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로 벌금형 처분을 받은 전력 있음
- 유리한 정황
 -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 사고 발생 후 안전보건계획 설정 및 전체 공사현장에 대한 위험성 평가 실시 등 재발 방지를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는 점
 -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을 받은 전력 없음